## 국가보안법위반(반국가단체의구성등)·국가보안법위반(간첩)·국가보 안법위반(자진지원·금품수수)·국가보안법위반(특수잠입·탈출)· 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국



## 가보안법위반(편의제공)

[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 2. 23. 2011고합1131,2011고합1143(병합),2011고합1144(병합),2011고합1145(병합),2011고합 1146(병합)]

## 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검 사】[기소, 공판] 이인걸, 강정석 [기소] 이성규, 박태호, 송강 [공판] 김신, 김성주, 정원두

【변호인】 법무법인(유한) 정평외 5인

## 【주문】

피고인 1을 징역 9년 및 자격정지 9년에, 피고인 2를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에, 피고인 3을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에, 피고인 4를 징역 2년에, 피고인 5를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에 각 처한다.

다만, 피고인 4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별지1 압수물 목록 중 순번 제1번 내지 제12번, 제67번, 제69번 내지 제95번 기재 각 압수물을 피고인 1로부터, 순번 제13번 내지 제17번, 제65번, 제66번 기재 각 압수물을 피고인 2로부터, 순번 제18번 내지 제64번, 제66번 내지 제68번, 제96번 내지 제114번 기재 각 압수물을 피고인 3으로부터, 순번 제115번 내지 121번 기재 각 압수물을 피고인 4로부터, 순번 제122번 내지 제125번 기재 각 압수물을 피고인 5로부터 각 몰수한다.

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2 기재 각 국가보안법위반의 점,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3 기재 각 국가보안법위반의 점, 피고인 3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4 기재 각 국가보안법위반의 점, 피 고인 4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5 기재 각 국가보안법위반의 점, 피고인 5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 지6 기재 각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.

【이유】

]

[이유]

1

[이유]

]

[이유]

1

[이유]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"국가보안법위반(반국가단체의구성등)·국..." (판례, 2011고합1131,2011고합1143(병합),2011고합1144(병합),2011고합 1145(병합),2011고합1146(병합))

]

[이유]

]

[이유]

]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